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□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(관세청훈령 제2094호, 2021-03-30)

2. 개정사유

□ 심사체계 개편,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

3. 주요 개정 내용

- □ **갱신심사**를 **본부세관장이 수행**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**심사기간 장기화***에 **적극 대응**
 - * 평균 심사 소요기간 : ('18) 97 → ('19) 104 → ('20) 105 → ('21) 129 → ('22) 131

구분	현재	개정(안)
갱신심사 주체 (제5조 사무분장 등)	• 관세평가분류원장	•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*도 수행 가능 *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

- □ 통관적법성 심사의 주요쟁점* 등에 대한 중간·결과보고(본청) 절차 및 본부세관장의 심사 결과 직접 통지(대상 업체) 근거** 마련
 - * 타부서 업무협의 필요·타기관 통보. 기타 관세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
 - ** 현재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장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본부세관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업체에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

구분	현재	개정(안)
갱신심사 절차 (제33조 제2항)	•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업체에 직접 통보 가능	*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통지, 심사 중단 등에 대한 통지를 세관장이 직접 업체에 통보 가능
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(제34조)	• 관세평가분류원장을 통해 본청에 결과 보고	• 세관장이 직접 본청에 보고 뒤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
	• 본청 중간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음	* ^① 조사의뢰 등 타부서 업무 협의 필요사항②타기관 통보 관련 사항③다른 심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본청 중간보고

□ 업체 신청 철회에 따른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

구분	현재	개정(안)
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(제11조의 2)	_	•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 반환

□ 심사팀이 **업체의 명백한 탈세 정황** 등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갱신 심사를 **관세조사**로 **전환**할 수 있는 **근거 마련**

구분	현재	개정(안)
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(제34조 제7항)	_	•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 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'지원 업무'로 명확화

- 위탁 업무 대상을 '서류심사 지원업무' 및 '예비심사 지원업무'로 명확화하여 법령*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
 - * (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)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용어 정비

- '종합심사'를 '갱신심사'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 조사(기업심사)와 혼동 여지 제거
 - ※ 종합심사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<u>공인</u>의 <u>갱신</u>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재심사(통관적법성 검증 포함)
- **통관적법성 '검증'** 대신 '**심사**'로 통일(통관적법성 검증 → 통관적법성 심사)
- 4. 신·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: "붙임"과 같음
- 5. 시행일자 : '24. 3. .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 출 처 : 관세청 심사정책과
- 담 당 자 : 김덕기 사무관(042-481-7865), 장윤희 주무관(042-481-7866)
- 제출방법 : 온나라 문서·메모보고, 내부메일, E-Mail(aeo1@korea.kr)
- 제출기한 : '24. 3. 7.